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1 선고 2020가단3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변론 종결 2021. 3. 3

판결 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답 1865㎡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24.접수 제27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5. 17. 원주시 C 답 1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관하여 매매대금 55,360,000원,잔금 지급기일 2018. 5. 17.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장 부분 송달 후 2주 내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D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17.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55,36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7. 5.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2746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각 인정 된다.

그러나 한편,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한 사실, 피고가 D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6,000,000원을 E에게,2017. 4.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농업회사법인 F에 각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 윤